

# 신용장거래에서 네고서류의 분실에 대한 은행의 책임에 관한 소고 - UCP 600을 중심으로 -

임 목 삼\*

- 
- I. 서론
  - II. 서류송달 중 분실에 대한 관계당사자의 책임
  - III. 서류송달사고에 대한 은행의 면책규정으로 인한 문제점
  - IV. 서류송달사고에 대한 은행의 면책규정에 대한 대응방안
  - V. 결론
-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국제무역은 異國 간에 물품(혹은 재화)의 이동(輸出入)으로 인하여 발생하

---

\*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원, 배화여자대학 겸임교수

는 부가가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내거래에 비하여 국제거래는 시·공간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3자<sup>1)</sup>에게 이전하거나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안정된 거래가 보장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무역거래의 대부분은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이행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상은 대금을 받지 않고 물품을 선적하거나 수입상은 물품을 수령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출상과 수입상은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sup>2)</sup>

신용장은 무역거래의 대금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그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상인 수익자가 통지된 신용장에 명기된 제서류에 일치한 서류를 제시하면 그 서류와 상환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신용장에 따라 발행된 환어음의 지급 또는 인수를 하거나, 혹은 타은행에게 지급(연지급)·인수 또는 매입할 수 있도록 수권하는 모든 약속증서를 말한다.<sup>3)</sup>

즉, 수출상과 수입상은 체결한 계약과 일치되는 물품과 함께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매도인은 인도의무를 다하게 되고, 계약과 일치한 물품이 선적되었음을 확인한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sup>4)</sup>인 船荷證券이나 계약이행을 확인한 운송서류들(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 보험증권 등)은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제시되어 대금을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역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물품인도와 대금회수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오고 있다.

본고는 국가 간 수많은 서류의 이동 중에 간혹 분실에 의하여 곤란한 문제가 발생될 때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개선점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1) 여기서 “제3자”는 국제운송인(이른바, 국제운송회사)과 국제무역결제인(이른바, 외국환은행)을 의미하고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정보제공처들로부터 한정된 정보를 입수하여 문서상 효력을 증거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게 되는 계약서를 의미한다.

2) 즉,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국제무역정의가 “서류의 거래”이다.(양영환·오원석, 『최신 무역상무론』, 법문사, 2005, pp. 5~6)

3) 양영환·오원석·서정두, 『신용장론』, 법문사, 2002, pp. 51~52.

4) 신용장이란 매수인을 대신하여 개설은행이 직접 또는 매도인 국가의 은행을 통하여 상품의 권리증권, 선급자금 또는 상환약속 등의 목시담보가 있으면 은행이 받는 담보를 대가로 대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Richard King, *Gutteridge and Megrah's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8th ed., Europa pub., 2001, p. 1)

있다.

매매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을 물품(권리증권) 또는 계약과 일치하거나 이행 되었음을 확인한 제서류들이 분실되었을 때는 상호합의 하에 보완, 보상 또는 재교부를 하면 문제가 없으나, 신용장과 같이 당해 서류들의 제시가 제3자인 외국환은행을 통할 때는 분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責任所在의 歸結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은행은 신용장거래의 준거법인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서류송달에 관한 면책 규정을 들어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게 해오고 있다. 이는 고객의 위임에 의하여 신용장거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은행이 위임된 바에 따라 명확히 책임을 준수하였다면 신용장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개정된<sup>5)</sup> UCP600 제35조는 은행 간 책임소재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지정은행이 적격한 서류를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에게 송부하는 중 분실하였더라도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은 상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장거래의 안정에 목적을 둔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서류의 분실에 대한 책임을 신용장통일규칙에서 규정한 바 그대로 해석한다면, 은행의 면책규정으로 인하여 개설의뢰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상의 서류송달에 대한 은행의 면책관행에 따라서 관계당사자간 책임귀속의 사각지대를 UCP600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는데 우선 목적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개설의뢰인의 입장에서 서류분실에 대한 책임관계를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 2. 선학의 연구동향 및 본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송달 중 분실에 관한 관계당사자의 책임에 관한 논의는 1992년 김종철<sup>6)</sup>과 장홍훈<sup>7)</sup>의 박사학위논문과 H.C. Gutteridge and M.

---

5) 1993년 신용장통일관행(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이하, UCP500)이 개정된 이후 13년이 경과된 뒤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하, UCP600)의 최종 초안을 작성하고, 2006년 10월 25일 표결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ICC 은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UCP600을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Megrah의 저서<sup>8)</sup>에서 서류송달에 대한 은행의 면책을 중심으로 UCP500에 의거하여 소개한 바 있고, 이어 1996년 강원진<sup>9)</sup>은 서류송달에 관하여 위험의 이전을 중심으로 고찰한 바 있다.

이상의 문헌은 UCP500을 중심으로 신용장거래에 있어 통신 및 서류송달의 분실과 관련하여 은행은 책임이 없고, 비용 또한 개설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각 조문에 입각하여 披瀝하였다. 특히, 강원진 교수의 논문은 서류를 송달하는 가운데 그 위험이 이전되는 시기를 은행실무관행에 입각하여 구분하였다.

UCP500 제16조에서 규정한 은행의 면책규정은 관계은행의 책임소재에 대한 혼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무적인 해석이 제기된 것이다. 개정된 UCP600 제35조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은행의 면책규정 뿐만 아니라 은행 간의 신용장대금 상환책임을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에게 명시적으로 귀속시킴으로서 은행간 신용장거래의 안정을 의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은행의 서류송달에 대한 면책의 책임소재를 은행의 실무관행에 입각하여 자세히 하고<sup>10)</sup>, 그 결과 발생될 수 있는 개설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을 중심으로 ICC 은행위원회 유권해석에 대한 사례와 본 주제관련 국내외 법원의 판례 그리고 先學의 文獻을 참고하였다.

6) 김종철, “貨換信用狀 統一規則에 관한 ICC의 有權解釋”,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7) 장흥훈, “信用狀發行銀行의 權利와 義務에 관한 實證的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8) H.C. Gutteridge & M. Megrah,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6th ed., Europa. Pub., 1984.

9) 강원진, ‘신용장거래에서 통신 및 서류송달사고에 따른 위험의 이전’, 「부산상대논집」 제67호, 1996. 6, p. 70.

10)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장개설이나 관련 은행간 고지(transmission of messages)에 관한 업무관행은 대체로 SWIFT System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送信 사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과 강원진 교수의 전제논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SWIFT System은 회원은행 간에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이지 못하므로 서류분실에 대한 책임소재의 논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II. 서류송달 중 분실에 대한 관계당사자의 책임

신용장거래에서 지정은행 또는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게 서류를 송부하였을 때, 지연 또는 분실사고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은행과 관계당사자는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분실된 서류로 인하여 개설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일치되는 서류가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용장대금을 결제를 해야 할 것이고, 매수인(신용장 개설의뢰인)은 서류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상품입수가 지연되거나 還賣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

신용장거래에서 선적서류를 송달하는 과정 중 분실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접근은 다음의 두가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수익자로부터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인지를 신용장거래 관계당사자로부터 확인이 된 상태에서 송부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다음으로는 서류분실의 과실을 회피하기 위한 은행의 의무를 명확히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용장의 거래과정에서 서류를 송부하는 중 분실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가 수익자로부터 제시된 서류를 지정은행(또는 자유매입은행)이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에게 송부하기 전에 분실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지정은행(또는 자유매입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제시한 서류를 개설은행에게 송부하는 중 분실하는 경우이며, 셋째는 지정은행(또는 자유매입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를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이 분실한 경우이다. 이를 본 논문에서는 “서류송달 전 분실”과 “서류송달 중 분실”, “서류수취 후 분실”로 나누고, 관계은행의 서류심사결과와 연계하여 서류송부 중 분실의 책임소재를 신용장통일규칙에 근거하여 규명하였다.

### 1. 서류송달 전 분실

신용장거래에서 지정은행은 신용장조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가 제시되었는지를 심사<sup>11)</sup>하여야 하고, 그 심사는 제한된 기간 내(신용장의 유효

효기간)에 이루어져야 한다.<sup>12)</sup>

서류심사와 관련하여, 제시된 서류를 은행이 심사하기 전에 분실하였다면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sup>13)</sup> 또는 매입을 하여야 하는 일차적 책임이 있고(UCP600 제15조), 서류심사 후 하자있는 서류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시자에게 신속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UCP600 제16조 c항), 그와 같이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로 간주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 서류에 대하여 제한된 기간 내에 결제 또는 매입을 하여야 하지만 제시된 서류를 분실하여 서류를 심사하지 못하면 적격성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결제 또는 매입을 할 수 없는 중개은행(intermediary banks)<sup>14)</sup>은 개설은행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고, 서류분실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수탁의무위반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할 것이다.

### 1) 적격한 서류의 분실

#### (1) 지정은행과 개설은행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으로부터 신용장에 대한 결제 또는 매입을 수권 받은 지정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수리한 서류를 분실하였다면 “신용장조건에 따라 일치하는 제시로 간주한 서류가 지정은행에게 수리된 때 책임은 수익자로부터 개설은행 앞으로 이전 된다”라는 ICC 은행위원회의 유권해석<sup>15)</sup>에 근거

11) 지정은행, 확인은행,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최대 5은행영업일이 각자 주어진다.(UCP600 제14조 b항)

12) 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지점이나 중개은행에게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전에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수익자는 신용장조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신용장 결제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13) UCP600 제2조에서 결제(honour)는 지급신용장의 경우 일괄출급 지급,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는 연지급 약정을 부담하고 만기에 지급, 인수신용장의 경우에는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14) 신용장거래에서 중개은행(the intermediary banks)은 개설은행이 지정한 지정은행(nominated banks)과 매입지정이 없는 매입은행을 의미하거나 개설은행과 확인은행간의 관계에서 확인은행을 의미한다. 즉, 중개은행은 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에게 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송달하거나 송달받는 중 관계된 모든 은행이라고 할 수 있다.

15) ICC Documents 470/444, 470/452, April 23, 1985(강원진, 상계논문, p. 73)

하여 지정은행은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제시된 서류가 적격하다고 결정한 지정은행은 UCP600 제15조 c항에 따라 결제 또는 매입을 할 수 있고, 해당 서류를 확인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UCP600 제35조는 UCP500 제16조를 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삽입하였다.

“지정은행이 제시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한다고 판단한 후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송부한 경우, 지정은행의 결제 또는 매입여부에 불문하고, 비록 서류가 지정은행과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 사이 또는 확인은행과 개설은행 사이의 송부도중 분실된 경우에도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결제 또는 매입을 하거나, 그 지정은행에게 상환하여야 한다.”<sup>16)</sup>

UCP500 제16조에서는 은행의 서류송달사고에 대한 면책에 대하여만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지정은행은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최근 개정된 UCP600에서는 은행간 신용장거래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제시된 서류의 적격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지정은행에게 개설은행은 신용장개설 당시 약정한 수익자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였다.

## (2) 자유매입은행과 개설은행

매입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매입은행이 송부한 서류가 분실되었어도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은 매입지정 은행과 같이 상환하여야 한다.

개설은행이 지정은행으로 수권한 확인은행이 아닌 한, 지정은행은 지정의 승낙여부를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수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만 결제 또는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취하거나 또는 서류

---

16) “If a nominated bank determines that a presentation is complying and forwards the documents to the issuing bank or confirming bank, whether or not the nominated bank has honoured or negotiated, an issuing bank or confirming bank must honour or negotiate, or reimburse that nominated bank, even when the documents have been lost in transit between the nominated bank and the issuing bank or confirming bank, or between the confirming bank and the issuing bank.”(UCP600 Art. 35.)

심사 후 서류를 개설은행에게 송부하였다는 외형적인 사실만으로 결제 또는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UCP600 제12조 a항, c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은행에게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을 상환할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없다.

ICC 은행위원회는 지정은행에서만 서류를 매입하도록 허용한 매입제한 신용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은행이 아닌 제3의 은행을 통하여 서류가 개설은행 앞으로 제시되었다면 하자가 없는 한 개설은행은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sup>17)</sup>을 내린바 있다.

즉, 개설은행으로부터 매입에 관하여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은행이 개설은행에게 서류를 제시하였을 경우에도 개설은행은 하자가 없는 한 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UCP600 제7조 c항과 제8조 c항에 따라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 또는 매입하고 서류를 송부한 지정은행에 대하여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정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sup>18)</sup>에서 서류를 분실하였더라도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은 신용장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UCP600 제7조와 제8조 각 a항에서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들이 지정은행에게 제시되고 그것이 적격하면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은 결제하도록 하고 있고, 동 조항 각 c항에서 결제 또는 매입한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한 지정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을 상환하기로 확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서류를 송부한 지정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상환하기 위한 요건은 신용장조건과 일치한 제시를 지정은행이 확인했을 경우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된 적격한 서류를 개설은행의 지정한 은행이 아닌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중에 분실하였더라도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17) 신용장에서 지정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도 개설은행은 이를 사유로 부도처리를 할 수 없으며 하자사항도 아니다.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을 제한하는 이유는 개설은행의 해외법인이나 지점일 경우,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일 경우, 아니면 지정은행이 수수료를 보상조로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에게 지불하거나 기타 사유로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이 요청한 경우이다.(ICC Opinion TA519; 대한상공회의소 외2, 『UCP600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2007. p. 85~86)

18)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취하거나 또는 서류심사 후 서류를 개설은행에게 송부했다는 것으로 결제 또는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UCP600 제12조 c항)



지정되지 않은 매입은행이 적격하다고 결정한 서류를 신용장에 명시된 유효기간 내에 개설은행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송부하는 중 분실하였다면, 유효한 기간 내에 서류가 제시되지 못할 것이므로 개설은행은 상환책임이 없을 수도 있다.<sup>19)</sup> 이러한 경우는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이 신용장조건에서 상환을 위한 조건으로 관련 서류를 유효기간 내에 제시할 것을 명시하였을 경우에만 해당된다.<sup>20)</sup>

### (3) 확인은행과 개설은행

확인은행<sup>21)</sup>은 신용장대금에 대하여 독립적인 채무를 지게 되므로 서류가 적격하다고 결정하게 되면 동 서류를 결제 또는 매입 후에 개설은행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서류를 확인은행으로 송부한 다른 지정은행에게 상환<sup>22)</sup>하는 의무를 부담한다.(UCP600 제8조, 제15조 b항)

만일, 확인은행이 결제를 거절하게 되면 UCP600 제16조 g항에 따라 개설은행은 확인은행에게 지급된 모든 상환대금을 확인수수료, 이자와 함께 반환받을 수 있다.

개설의뢰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그 지시를 이행할 목적으로 다른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설은행 또는 통지은행은 다른 은행에게 전달한 지시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UCP600 제37조 a, b항에 따라서 개설은행은 서류의 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개설의뢰인에게 지정은행에게 상환한 대금을 반환청구 할 수 있지만, 확인은행

19) 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지점이나 중개은행에게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전에 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면 수익자는 신용장조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신용장 결제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논리로 중개은행이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에게 서류를 인도하는 중 분실하였다면, 결국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전에 서류가 제시될 수 없으므로 중개은행은 개설은행에게 결제대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20) 개설은행에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조건으로 신용장대금을 상환한다는 명시적인 특약이 존재하는 신용장조건인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지정은행에 대한 상환책임이 없을 수 있다.(Richard King, op, cit., p. 165)

21) 중개은행이 확인은행일 때, 신용장조건에 확인은행이나 확인은행과 관련한 환어음의 지급은행에게 환어음의 인수를 요청했다면 확인은행은 UCP600 제8조에 따라 수익자가 제시한 어음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야 한다.

22) 신용장이 확인은행에서 매입으로 사용가능한 경우 무소구의 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의 경우에는 입장이 다르다.

개설은행이 UCP600 제37조 a항에 따라 확인은행에게 상환한 신용장대금을 개설의뢰인에게 요청하지 않는다면 확인은행은 지정은행에게 주의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sup>23)</sup>

## 2) 부적격한 서류의 분실

지정은행에 제시된 서류가 부적격하다고 결정되면, 수익자에게 그것들을 반환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UCP600 제16조 c항) 만일, 부적격한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은행이 분실하였다면 수익자는 서류의 受託義務違反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sup>24)</sup> 은행 간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면, 지정은행은 개설은행에게 보상 또는 상환을 요청할 수 없을 것이다.

수익자에게 부적격한 서류를 반송하는 과정 중에 분실되었다면, 은행의 책임은 서류의 반환에 따른 수익자의 조치가 어떻게 수반되는지에 따라 다르다. 수익자가 반환되는 서류를 그대로 보관하기로 하였다면 책임질 것이 없으나, 다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없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 2. 서류송달 중 분실

개설은행은 일치하는 선적서류가 송부되고 그 제시된 서류를 일치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 서류를 송부한 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UCP600 제15조 a항)

즉, 개설은행은 그 자신이 개설한 신용장에 의하여 타은행에게 일치하는 제시와 상환으로 지급·연지급·환어음의 인수·매입을 수권한 경우, 이들 지정은행은 수권받은 바에 따라 적격한 서류를 결제 또는 매입을 하고 개설은행에게 송부하는 절차를 종료하였다면 개설은행은 상환하여야 한다는 것

---

23) Richard King, op. cit., p. 164.

24) Richard King, ibid, p. 162.

이다.

그러나 서류의 송달이 계속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개설은행은 UCP600 제16조 c항과 d항에 따라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권한을 갖게 되고<sup>25)</sup>, 이 같은 경우 개설은행은 UCP600 제16조 g항에 따라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통지하고 이미 지급된 신용장대금의 반환을 그 동안의 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서류의 송부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연, 전달도중의 분실, 훼손 또는 다른 실수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은행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규정(UCP600 제35조)에 따라 개설은행과 지정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지만<sup>26)</sup>, 지정은행의 이 같은 면책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위임받은 바를 명확히 이행하였다는 입증책임<sup>27)</sup>이 수반되어야 개설은행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정은행은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으로부터 수권받은 바에 따라 송달업무가 차질없이 이행되었음을 입증하게 되면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설은행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수익자는 지정은행이 제시된 서류를 적격하다고 결정하여 개설은행에 송부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요청할 수도 있다.<sup>28)</sup>

### 3. 서류수취 후 분실

#### 1) 적격한 서류의 분실

---

25) Bayerische Vereinsbank Aktiengesellschaft v National Bank of Pakistan의 사건에서는 UCP500 제14조 d항 i 절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UCP600에 상응하는 조항은 제16조 c항과 d항이다.([1997] 1 Lloyd's Rep 59 at 66)

26) ICC Banking Commission R335에 따르면 UCP500 제16조는 전자통신에 의한 통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UCP600 제35조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고지의 전송 또는 서신이나 서류의 송부과정...”이라고 개정하게 된다.

27) 지정은행은 개설은행에게 송부서류를 접수하였다는 사실을 특사배달영수증(Courier Receipt, Post Receipt or Certificate of Posting) 등을 통하여 입증한다.(UCP600 제25조 참조)

28) 앞서서 언급한 '1. 서류의 송달 전 분실 (2) 적격한 서류의 분실'과 같은 결과이다.

지정은행이 제시된 서류를 보관하는 중에 분실하게 되면, 그 서류들을 수권된 범위 내에서 심사하였는가에 따라서 관계은행의 책임소재가 구분되었었다.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들이 문제없이 송부되면,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은 지정은행에게 상환하여야 하고,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대금 지급에 대한 보상을 받기위하여 개설의뢰인과 체결한 거래조건에 따라 결제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설은행이 보관 중인 서류를 개설의뢰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분실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

한편, 송부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개설은행은 해당서류를 반송하거나 지정은행의 관리 하에 그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설은행이 그 서류를 보관하는 중에 분실하였다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서 UCP600 제16조 f항에 따라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서류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지정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용장대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으로부터 보상(결제대금의 청구)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sup>29)</sup>

## 2) 부적격한 서류의 분실

개정된 UCP600 제35조에서는 지정은행이 일치하는 서류를 송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지정은행의 결제 또는 매입여부에 상관없이 결제 또는 매입을 하거나, 그 지정은행에게 상환책임이 있음을 천명하였다.

개설은행이 지정은행에게 불일치하다고 결정한 서류를 반송하는 중에 분실하였다면 UCP600 제35조에 따라 서류의 송부과정에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모든 은행은 면책되지만, 지정은행이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다고 결정한 후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에게 송부한 경우라면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은 송부 중<sup>30)</sup> 분실된 서류에 대하여 결제 또는 매입을 하거나 지정은행에게 상환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개설은행은 서류가 불일치함을 통보하는 것과 서류를 송

29) Richard King, op. cit., p. 166.

30) 지정은행과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 사이 또는 확인은행과 개설은행 사이.

부하는 과정이 명확히 이행되었음을 지정은행에게 입증하여야만 이미 상환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UCP600 제37조 a항에 따라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다른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개설의뢰인에게 지정은행에게 상환한 대금을 보상받게 된다.

개설의뢰인은 수익자에게 지정은행을 통하여 신용장대금이 지급되었음을 근거로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의 재차 송부를 직접 요구하게 된다.

결국, 지정은행의 서류심사결과가 개설의뢰인에게 논란의 여지가 된다. 이와 같은 경우 다른 서류(duplicated set of documents)를 제공하여 개설의뢰인이 그것을 수용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개설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물품이거나, 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제시된 서류가 불일치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개설의뢰인과의 약정에 따라서 서류의 분실로 인한 개설의뢰인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한편,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이 서류를 심사하기 이전에 분실하였다면, 지정은행에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경우 UCP600 제16조 d항의 서류심사 기간 내에 분실된 서류를 다시 확보하여 심사를 재개하면 다행이지만,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류가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을 할 권리로부터 배제된다.

### Ⅲ. 서류송달사고에 대한 은행의 면책규정으로 인한 문제점

#### 1. 서류의 송달 전 분실

##### 1) 지정은행이 서류를 분실하였을 경우

실무적으로 지정은행이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으로부터 수권 받은 범위 내에서 위임받은 바를 명확히 준수하여 적격한 서류를 보관하던 중 분실하였다면, 지정은행은 수익자로부터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서류를 다시 요청하여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에게 재송부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서류의 분실책임을 은행에게 최대한 면책되도록 규정한 UCP600은 지정은행에게 결제 또는 매입한 사실과 상관없이 신용장대금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선적서류가 수리되었음을 개설은행에게 통지한 지정은행은 신용장대금을 개설의뢰인의 현실적인 의사와 상관없이 신용장개설약정에 근거하여 신용장거래과정에 따라 상환 받게 된다.<sup>31)</sup>

그러나 UCP600 제35조와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설은행의 상환책임을 서류의 송달과정 중에 발생한 책임에 대한 면책과 적격 서류를 송부하였을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서류의 송달사실과는 상관없이 신용장대금을 이미 상환 받은 지정은행에 대하여 개설은행은 서류분실과 관련된 지정은행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 자유매입은행이 서류를 분실하였을 경우

개설은행은 자유매입은행으로부터 제시되는 서류와 지정은행으로부터 제시되는 서류를 구분하지 않고 제시된 서류가 적격하다면 상환을 하여야 한다.

매입지정을 승낙하지 않은 지정은행과 자유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게 서류를 제시했을 경우에는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신용장대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데, 서류가 제시되기 이전에 분실되었다면 개설은행은 적격 서류를 매입하여 송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환을 할 수 없다.(UCP600 제12조 a항, c항)

그러나, UCP600 제7조와 제8조 각 a항에서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들이 지정은행에게 제시되고 그것이 적격하면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은 결제하도록 하고 있고, 동 조항 각 c항에서 결제 또는 매입한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한 지정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을 상환하기로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서류를 송부한 지정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상환하기 위한 요건은 신용장조건과 일치한 제시를 지정은행이 확인했을 경우라는 것이므로, 제시된 적격 서류를 개설은행의 지정은행이 아닌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중에 분실하였더라도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31) 고중현, '은행의 신용장대금 상환에 관한 연구', 「경영논집」, 관동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1999, p. 153을 참조.

UCP600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행의 면책에 관한 규정은 지정은행과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에 관한 것이지만 위의 해석에 기초하여 자유매입은행에게 적용하여 해석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 3) 확인은행이 서류를 분실하였을 경우

확인은행은 신용장대금에 대하여 독립적인 채무를 진다. 제시된 서류가 적격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결제 또는 매입 후에 개설은행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확인은행은 서류를 송부한 다른 지정은행이 있을 경우에는 신용장대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UCP600 제8조, 제15조 b항)

그러나, 확인은행이 개설은행에게 적격하다고 결정한 서류를 송달하는 중 분실하였다면, 개설은행은 확인은행에게 이미 상환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sup>32)</sup> 개설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확인은행에게 상환대금의 반환을 청구한다면, 확인은행은 위임받은 바를 명확히 준수하지 않은 중개은행(서류의 제시은행)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용장대금의 반환을 요청해야 하는데, 개설은행에 서류를 송부한 행위는 서류의 적격성을 인정한 것이고 취소불능으로 결제 또는 매입할 의무가 확인은행에게 있기 때문에 개설은행은 확인은행에게 상환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지 말고, UCP600 제37조 a항에 따라 확인은행에게 상환한 신용장대금을 개설의뢰인에게 요청해야 할 것이다.

### 4) 부적격한 서류를 수익자에게 반환하는 중 분실하였을 경우

은행에 제시된 서류가 부적격하다고 결정되면, 수익자에게 서류를 반환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CP600 제16조 c항) 그러나 그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은행이 분실하였다면 수익자는 은행에 대하여 서류의 수탁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은행은 UCP600 제35조와 ICC Opinion R272에 근거하여 서류송달의 하자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지난 UCP500 제16조에서는 서류 송달 중 발생하는 분실에 대하여 포괄적인 은행의 면책<sup>33)</sup>을 규정하였으나, UCP500 제16조에 대한 ICC 은행위원회

32) 고중현, 전계논문, pp.154~155를 참조.

유권해석을 보면 본 조에서 지칭하는 “은행”은 개설은행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설은행, 통지은행, 양도은행 또는 지정은행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한 바 있고<sup>34)</sup>, 개정된 UCP600 제35조에서도 서류의 송부대상을 지정은행과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 2. 서류 송달 중 분실하였을 경우

지정은행으로부터 서류가 송달되는 중 분실되었다면 개설은행은 UCP600 제16조 c항과 d항에 따라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수 있게 되고, 이 같은 경우 개설은행은 동조 g항에 따라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통지하고 이미 상환된 신용장대금의 반환을 그 동안의 이자와 함께 청구 할 수 있다.

서류의 송부과정에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하여 은행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에 따라 개설은행과 지정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지만, 지정은행의 면책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수권받은 바를 명확히 이행하였다는 입증 책임이 수반되어야 개설은행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수익자가 지정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결제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은행이 적격한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요청할 수도 있다.

---

33) 신용장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서 고지, 서신 또는 서류가 전송 또는 송부되는 때, 또는 신용장에 송달서비스 선택에 대한 지시사항이 없어서 은행이 자신의 판단 하에 송부 방법을 선택한 경우, 고지의 전송 또는 서신이나 서류의 송부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연, 전달도중의 분실, 훼손 또는 다른 실수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은행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34)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ICC Pub., 2002, p. 221-222.



### 3. 서류 수취 후 분실

개설은행이 보관 중인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개설의뢰인에게 송부하기 전, 보관 중에 분실하여 개설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

반면, 부적격한 서류와 관련하여 개설은행은 해당서류를 반송하거나 지정은행의 관리 하에 그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설은행이 그 서류를 보관하는 중에 분실하였다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서 UCP600 제16조 f항에 따라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서류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받게 된다. 이 같은 경우 개설은행은 지정은행에게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용장대금을 상환하여야 하나, 개설의뢰인으로부터는 신용장결제대금의 청구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설은행이 불일치한 서류를 지정은행에게 반송하는 중 분실하였다면, UCP600 제35조에 따라 지정은행이나 개설은행은 면책이 된다.

개정된 UCP600에서는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의 부주의로 서류가 분실되었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게 되었으나, 지난 UCP500에서는 불일치한 서류를 반송하는 중 분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수익자나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은행은 보상하여야 한다는 명시가 없었다. 그러나 UCP500의 제14조 a항에서는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결제 또는 매입한 은행에게 개설은행은 서류를 송부받고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d항 iii절에서는 개설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한 경우 지정은행에게 이미 송부한 모든 보상금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서류를 거절하기로 한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은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이미 송부된 상환금에 대하여 반환(이자 포함)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그 결과 이와 같은 경우에 지정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이미 결제 또는 지급된 신용장대금을 상환받기 위해서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상환받지 못하였음과 개설은행의 부주의로 서류가 분실되었음을 입증하여야만 UCP500 제16조에 의거한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의 면책에 대하여 반박을 하여 신용장대금을 상환 받을 수 있었다.<sup>35)</sup>

#### IV. 서류송달사고에 대한 은행의 면책규정에 대한 대응방안

##### 1. 지정은행의 입증책임

신용장에 의하여 결제 또는 매입을 행한 은행은 서류의 송달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되겠지만,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분실된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고 있었음과 지시되거나 위임된 바에 따라 송달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개정된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서류의 송부와 관계없이 개설은행은 지정은행에게 결제 또는 매입을 하거나 상환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송부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되는 전제조건에 기초하고 있다.

지정은행이 송부한 서류가 적격함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개설은행은 이미 상환했던 신용장대금을 그 동안의 이자와 함께 반환청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지정은행은 수익자로부터 서류를 인도받게 되면, 서류인수장부에 기록하고, 적격하다고 판정한 서류심사 기록을 남겨야 하며, 해당 서류의 복사본을 비치해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확인은행이 서류를 송달하는 중 분실하였는데 적격한 서류를 송부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지정은행의 경우와는 달리 개설은행은 확인은행에게 이미 상환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개설의뢰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확인은행에게 상환대금의 반환을 청구한다면, 확인은행은 위임받은 바를 명확히 준수하지 않은 중개은행(서류의 제시은행)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용장대금의 소구를 요청해야 하는데, 개설은행에 서류를 송부한 행위는 위임된 바에 따라 서류의 적격성을 인정한 것이고 취소불능으로 결제 또는 매입할 의무가 확인은행에게 있기 때문이다.

---

35) James. E. Byrne, *The Comparison of UCP600 & UCP500*,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2007, pp. 239~242.

## 2. 개설의뢰인의 손해

개설의뢰인은 신용장개설 시에 개설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는 한<sup>36)</sup>, 은행 간의 서류분실에 대한 면책규정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도 개설은행에게 책임져야 한다.

이 경우에 개설의뢰인에게 초래되는 불이익은 두가지의 경우가 된다. 첫 번째는 분실된 서류와 같은 시점에 지정은행에게 제시된 다른 서류가 도착될 때까지의 지연되는 기회의 상실과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수익자에게 직접 접촉하여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송부받을 때까지의 기회의 상실과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그리고 적격한 서류가 도착할지에 대한 불안감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는 서류분실사고가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된다는 전제로 은행이 면책되는 것이므로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에게 관계은행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 확인하고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의 경우는 신용장거래의 안정과 은행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과 신용장을 사용하기로 약정한 개설의뢰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일 것이다. 만일, 수익자로부터 서류가 송부되지 않거나, 부적격한 서류가 도착된다면 개설의뢰인의 불이익은 重疊될 수 있다. 부적격한 서류가 송부되었다면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에게 부적격한 서류를 분실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그 동안의 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 3. 개설은행의 서류심사권한 박탈

지정은행이나 확인은행이 개설은행에게 송부한 서류가 분실되어도, 해당은행이 주의의무를 다하고 위임된 바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개설은행은 중계은행에게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용장대금을 상환할 책

---

36)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신용장의 유효기일에 맞추어 제시하여야만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다면 특약을 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개설은행은 수익자로부터 결제 또는 매입된 서류가 적격한지를 심사 할 서류심사권한을 박탈당한 채 상환하여야 한다.

물론, 신용장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UCP600 제35조가 개정보완 되었지만 이 때문에 UCP600 제37조에 근거하여 결과적으로 개설의뢰인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개설은행의 서류심사권한은 보호되어야 한다.

서류를 송부하는 중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되면, 개설은행은 이미 상환한 대금을 반환 혹은 결제받기 위하여 서류를 송부 한 은행에게 분실된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고 있었음과 지시되거나 위임된 바에 따라 송달하였음을 입증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개설된 신용장의 유효기간을 개설의뢰인과 합의하여 연장하도록 하고, 연장된 기간 내에 수익자로 하여금 다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여, 개설은행은 적격한 서류를 개설의뢰인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신용장거래환경을 개설의뢰인에게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V. 결 론.

UCP600 제35조는 은행간 서류의 송부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연, 전달도중의 분실, 훼손 또는 다른 실수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UCP500 제16조에서 지적된 관계은행의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를 적극 반영하여 은행 간의 신용장대금 상환책임을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에게 귀속시킴으로서 은행간 신용장거래의 안정을 의도하였다.

이는 고객의 위임에 의하여 신용장거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은행이 위임된 바에 따라 명확히 책임을 준수하였다면 신용장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은행간 신용장거래의 안정에 목적을 둔 신용장통일규칙의 서류의 분실에 대한 책임조항을 규정된 바에 따라 해석하면, 개설의뢰인은 신용장개설 시에 개설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은행 간의 서류분실에 대한 면책규

정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고, 분실된 서류를 다시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을 감수하여야 한다.

생각컨데, 은행간에 서류를 송달하는 중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개설은행은 이미 개설된 신용장의 유효기간을 개설의뢰인과 합의하여 연장하도록 하고, 연장된 기간 내에 개설의뢰인의 비용으로 수익자로 하여금 다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여, 개설은행이 심사한 적격한 서류를 개설의뢰인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신용장거래환경을 개설의뢰인에게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양영환·오원석, 『최신 무역상무론』, 법문사, 2005.  
-----·서정두, 『신용장론』, 법문사, 2002.
- 대한상공회의소 외2, 『UCP600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2007.
- 강원진, ‘신용장거래에서 통신 및 서류송달사고에 따른 위험의 이전’, 「부산  
상대논집」 제67호, 1996. 6.
- 고중현, ‘은행의 신용장대금 상황에 관한 연구’, 「경영논집」, 관동대학교 경  
영경제연구소, 1999.
- 김종철, “貨換信用狀 統一規則에 관한 ICC의 有權解釋”,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장흥훈, “信用狀發行銀行의 權利와 義務에 관한 實證的 研究”, 중앙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Byrne James. E., *The Comparison of UCP600 & UCP500*,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2007.
- Dolan Jhon F., *The Law of Letter of Credit: Commercial and Standby  
Credit*, rev. ed., A.S. Pratt & Sons. 2005.
- Gutteridge H.C. & M. Megrah,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6th ed., Europa. Pub., 1984.
- King Richard, *Gutteridge and Megrah's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8th ed., Europa pub., 2001.
- Wickremeratne Lakshman & Michael Rowe, *The Guide to Documentary  
Credits*, 2nd ed., International Finance Service Association. 2004.
-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ICC Pub., 2002.

## ABSTRACT

### **A Study on The Duty of the Bank's upon Loss of the Documents under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 Focused on UCP 600 -**

Lim, Mok S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guideline for the loss of documents relating to the delivery of documents under Letter of Credits transactions.

If the documents are lost while in transit from the nominated bank to the issuing bank neither the nominated bank nor the issuing bank is liable as Article. 35 of the UCP600.

Normally such matters are settled amicably between banks and problems are only likely to give rise to litigation where this cannot be done and the applicants does not want the goods or take delivery or sell them on because of the loss of documents.

UCP 2007 Revision stated that a presentation is complying and forwards the documents to the issuing bank, whether or not the nominated bank has honoured or negotiated, an issuing bank must honour or negotiate, or reimburse that nominated bank.

Accordingly, the applicant liable to the issuing bank for any damage sustained as a result of the loss of document. In such circumstance it might be possible to obtain a second(duplicate) set of documents that were sufficient to satisfy the applicant that the document were compliant and enable the applicant to obtain deliver of documents or comply with the terms of a sub-sale.

If the applicant does not want the documents presented, no the less,

the bank might find it difficult to prove that complaint documents had been presented and, subject to the terms of arrangement with the buyer, could be liable for damage sustained by the applicant as a result the loss of the documents.

Key Words : UCP600 Art. 8, 15, 16, 35, 37, Loss of the Documents